



(1 / 1)

발급번호		납세증명서			처리기간	
T911-834-9612-129					즉시(단, 해외이주용 10일)	
납세자	상호(법인명)	사업자 등록번호				
	성명(대표자)	한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(본점)					
증명서 의 사 용 목 적	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금수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이주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 타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주번호 제 호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주확인일 년 월 일				
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(단위: 원)						
유예종류	유 예 기 간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 산 금
	해	당	없	음		
<p>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</p> <p>1. 증명서 유효기간 : 2018년 6월 23일 2.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: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 ()</p>						
접수번호	100202058589					
담당부서	민원봉사실					
담당자						
연락처	032-770-0225					
				2018년 5월 24일		
				인천세무서장		



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장



* 본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의 「민원증명」 서비스에서 「인원증명서비스」에 의해 문서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문서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.

* 본 증명서는 인천광역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한 증명서이며,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.